

94.12.7

용모 제한둔 여사원채용 검찰 “평등법위반 아니다”

기업체가 남녀 사원을 함께 모집하면서 여사원에게만 용모·키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여성사원만을 따로 뽑으면서 용모를 제한할 경우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검은 6일 고졸 여사원 채용과정에서 단정한 용모·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제한해 여성민주회 등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44개 대기업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1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신이 남녀간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성의 고유한 직종에서 자격제한은 여성사이의 불평등일 뿐 남녀사이의 불평등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의결 기자